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144
----------	------

제출일자 : 2022. 9. 15.

제출자 : 달성군



1. 제안이유

-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청년창업을 지원·성공시키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해 달성군 청년혁신센터를 건립하고
- 창업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근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시행규칙」 제3조

3.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위탁시설 :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 위치 : 화원읍 설화리 556-15외 1필지, 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 3층 4층
- 시설현황

시설명	층별	연면적	시설구성	비고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3층	259.08㎡	센터사무실, 스튜디오(영상제작실) 교육실, 공유공간, 취업안내센터	
	4층	259.08㎡	교육실, 소회의실(2), 공유공간, 입주사무실(4)	

나. 위탁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사무
 - 청년 창업 및 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
 - 청년 창업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입주공간 제공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창업 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 등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
 - 그 밖에 청년 창업 및 예비창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시설관리 전반

다. 위탁방법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 「동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

라. 위탁금액 : 위탁운영계획 및 예산계획 수립 중

4. 추진일정

-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상정 : 2022. 9월
- 모집공고 : 2022. 10월
- 수탁기관 선정 : 2022. 11월
- 위·수탁 협약 체결 : 2022. 11월
- 달성 청년혁신센터 위탁운영 : 2023. 1월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추진하거나 지원되는 각 호 사업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사업 추진·지원)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일자리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인력양성 사업
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4. 구인·구직 등을 위한 취업 알선 또는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사업
5.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6.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7.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지원 사업
8. 창업 지원 사업
9.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에 기여하는 사회 환경 조성 사업
10.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교육 등 활동지원 사업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